

1. 개정이유

-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,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 19685호, 2023.8.16. 공포, 2024.2.17. 시행)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을 인증하거나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,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와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및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특기할 사항 없음
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
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1조제2항·제30조의6제2항·제45조의3제4항·제47조제6
항”을 “제21조제2항·제30조의6제2항·제34조의4제3항·제45조의3제4
항·제47조제6항”으로, “자동차검사대행자”를 “튜닝부품인증기관, 자동
차검사대행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,
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
소

제3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,
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
지

제4조 본문 중 “자동차검사대행자”를 “튜닝부품인증기관, 자동차검사대
행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등록·검사·정비 또는 대체부품”을 각각 “등록·검사·정비·대체부품의 인증업무 또는 튜닝부품”으로 한다. 별표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,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튜닝부품 인증기관	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을 한 경우	법 제34조의4 제1항제1호	지정취소	
	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34조의4 제1항제2호	지정취소	
	다.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	법 제34조의4 제1항제3호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
	라.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34조의4 제1항제4호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
	마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34조의4 제1항제5호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
	바.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	법 제34조의4 제1항제6호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1조제2항·제30조의6제2항·제45조의3제4항·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, 대체부품인증기관, 자동차검사대행자, 지정정비사업자,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, 자동차관리사업자, 자동차제작자등,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 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21조제2항·제30조의6제2항·제34조의4제3항·제45조의3제4항·제47조제6항 ----- ----- 튜닝부품인증기관, 자동차검사대행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증거에 의한 처분) ① 관할 관청은 「자동차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또	제3조(증거에 의한 처분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
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
확보해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등록·지정의 취소 또
는 사업장의 폐쇄(이하 “등록
등의 취소”라 한다)

가.·나. (생략)

<신설>

다. ~ 마. (생략)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사업·업무의 정지(이
하 “사업등의 정지”라 한다)

가.·나. (생략)

<신설>

다. ~ 마. (생략)

3.·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조(청문) 관할관청이 등록등의
취소, 사업등의 정지, 해임명령

-----.

1.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
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
한 지정의 취소

라. ~ 바. (현행 다목부터 마
목까지와 같음)

2.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
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
한 업무의 정지

라. ~ 바. (현행 다목부터 마
목까지와 같음)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청문) -----

[illegible]

제6조(행정처분의 감경등) ①---

-----.

1. -----

----- 등
록 · 검사 · 정비 · 대체부품의

<u>품의 인증업무의 발전에 공이</u> 큰 때 2. 그 밖에 관할관청이 위반행 위의 동기·정도·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자 동차의 <u>등록·검사·정비</u> 또 는 <u>대체부품의 인증업무의 원</u> 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삭 제 ③ (생 략)	<u>인증업무 또는 튜닝부품</u>----- ---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등록·검사·정비·대</u> <u>체부품의 인증업무 또는 튜닝</u> <u>부품</u>----- ----- ----- --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